

종 법(宗法)

교육원법(敎育院法)

제1조 종헌 제69조에 의하여 종도교육사업을 관장하는 기관으로 교육원을 둔다.

제2조 교육원은 다음 업무를 담당한다.

1. 교육재료를 효율적으로 활용 운용하여 안으로는 본종 종지를 견고히 하고 밖으로는 도제를 양성하여 불교를 통한 호국인재를 배양한다.

2. 종도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년1회 교육수련회를 개최한다.

제3조 교육원장은 교육업무를 주관한다.

제4조 부원장은 제2조 2항을 실행하기 위하여 종헌 19장 및 20장 109조에 따라 연수원을 개설하며 그 원장이 되어 교육원장을 보필한다.

제5조 연수원에는 연수부장을 둘 수 있다.

제6조 이법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